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오판사례를 중심으로-

이 동 명*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Death Penalty in the Information Society -Focused on the misjudgement cases-

Dong-Myung Lee*

요 약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 소개한다.

▶ Keywords : 당위성, 사형폐지, 오판사례, 인권, 형벌.

Abstract

Sometimes, the misjudgement of imperfect human can not be avoided because capital punishment is decided by a judicial officer, human. Dreinstanzen system has been adopted to prevent misjudgement. However the possibility of misjudgement can not be entirely excluded in the judgement by a judicial officer as the judgement of a lower court and a higher tribunal depends on

• 제1저자 : 이동명, 교신저자 : 이동명

• 투고일 : 2014. 6. 10. 심사일 : 2014. 7. 14. 게재확정일 : 2014. 7. 22.

* 호남대학교 법학과(Professor, Dept. of law, Honam University)

the specific criminal cases. And in case of capital punishment executed by misjudgement, it leads to a cruelty result which has not ways to recover the damage. There is an opinion that dangerousness of misjudgement is lacking in persuasiveness because of insufficient demonstration for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However, also,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in case of misjudgement is persuasive with reality. In this case, even if other punishments are discussed separately, once capital punishment is executed, it can be irrevocable injustice because a nation itself commits a crime. According to this, I would like to find out causes of misjudgemen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rough the cas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Japan, which are rich in studies and case analysis related to misjudgement, and introduce their efforts to prevent misjudgement in this paper.

▶ Keywords : capital punishment, legitimacy, abolition, human rights,

I. 서 론

사형은 인간인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의 오판을 면할 수 없다. 오판을 방지하기 위하여 3심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특정 범죄사건에 대하여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지듯이 법관이 하는 재판에 대해 오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오판에 의하여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무자비한 결과를 초래한다. [1]

오판사건을 계기로 사형폐지론이 주장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Beccaria는 장 카라스(Jean Calas) 사건에서 충격을 받아 당시 형사사법을 비판한 것으로 생각되며, 1764년 「범죄와 형벌」에서 고문과 잔혹한 형벌은 폐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형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Beccaria는 두 가지 이유에서 사형을 인정하는데 국민이 국가를 전복하게 하는 경우에 최후수단으로, 그의 죽음이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진실한 방어수단일 때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사형폐지론으로 귀결된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오스트리아의 형법개정에 영향을 미쳐 비록 일시적이지만 사형폐지에 이르게 하였다.[2]

이와 같이 오판 문제는 위하력의 유무와 함께 사형존폐 논의의 중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판의 위험성은 사형폐지를 위한 불충분한 논증으로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

[3]도 있지만, 특히 오판을 이유로 한 사형폐지론은 현실성과 함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사형 이외의 형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형은 한번 집행되면 돌이킬 수 없는 부정의가 되고 국가 자신이 죄악을 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오판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일본 등 선진제국의 사례를 통해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판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고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들에 대해 소개하여, 형사사법체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보고 형사사법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오판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한국에서의 오판 사례

법관이 재판에서 신중을 기한다고 하여도 오판으로 판명된 사건은 많이 존재한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법관 중 35%가 한번 이상의 오판의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한다.[4] 이와 같이 아무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결이라 하더라도 오판의 위험성은 늘 존재하게 된다. 제3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미미할지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100%의 오판 확률인 것이다.[5]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사법제도에서 오판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전체의 93%이고, 특히 시민단체, 국회의원, 언론인, 교정위원 등의 90% 이상은 사법 판단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오판 가능성 때문에 사형을 폐지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62.4%로 나타났다. 국

가인권위원회는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은 그 생명을 회복할 수 없고 무고하게 제거된 생명의 가치는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더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6]

한편, 2005. 12. 01일 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법원에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으로서 위원회에서 진실을 규명하여 재심을 권고한 사건은 2010. 07월 현재 모두 42건이며, 이 중 무죄판결건수는 총 18건이다. 대표적으로 ‘민족일보조용수사건’, ‘태영호납북사건’, ‘남북귀환어부간첩조작의혹사건’, ‘차풍길간첩조작의혹사건’, ‘남북어부서창덕간첩조작의혹사건’ 등에 대해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다.[7]

1. 김시훈 사건

살인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 및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위 공소범죄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여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하여, 제2심법원에서는 “원심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자술서에 관하여 단지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고 있을 뿐이고 원심 제4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 자술서를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고 무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하면서 단지 고문과 강요에 의해서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여 그 임의성을 부인하는 취지인바, 동 자술서가 고문이나 강요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의 변호 외에 위 자술서의 임의성을 배척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자술서는 그 진정 성립과 임의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진정하다고 인정”하여 살인죄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되고 있던 중에 진범들이 검거되었고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른바 김시훈 사건[8] 등 상당수 사건이 객관적으로 오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이종간첩 사건

1955년 북파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다 북한군에 체포된 뒤 1년 7개월가량 대남간첩교육을 받고 다시 남파된 심문규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자수하였으나 불법 구금되어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위장 자수한 혐의로 국방경비법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06. 4월 비로소 심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육군첩보부대(HID)가 사건을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2009. 8. 18일 재심권고 결정을 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9]

에 대하여 “재심대상사건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사건을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심대상사건의 재판기록이 이미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 수집할 수 있는 최량의 증거인 수사기록 일부, 재심대상사건의 판결서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수사서류에서 보이는 의문점과 법원의 증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무죄가 확정되었다.

3. 한강인도교 폭파 사건

6·25전쟁 당시 1950. 6. 28일 2:30분 국군이 한강인도교를 폭파하여 민간인 800여 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당시 공병감 최창식 대령은 한강으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폭파조에 명령하여 한강인도교와 3개의 철교를 폭파하고, 오전 4시쯤 광진교도 폭파하였다. 당시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명에 의해 설치된 군법회의에 “6. 28일 오전 2시경 아군 전 전선이 후퇴하게 되자 용산 육군본부에서 총참모장으로부터 교량 폭파에 대한 전화명령을 수함을 계기로 하여 적정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도교하는 아군 부대로 인한 고려를 전연 도외시키고 동일 오전 2:30분경 〰 〰 인도교를 폭파하여 막대한 차량과 兵員은 교량 절단 간격으로 추락하고 〰 〰 일대 혼란을 야기하였음 〰 〰 설령 교량 절단 명령이 유하였다 하더라도 적정을 확인하고 아군부대가 완전히 渡橋한 연후에 절단공사를 실시함은 기술참모인 공병감의 책무이며 〰 〰”는 이유로 국방경비법 제27조 적전비행죄로 회부되었다. 1950. 9. 15일 유죄판결을 받아 같은 해 9. 21일 14:00시 부산 교외에서 총살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군법회의 제도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재심이 불가능하였다. 4·19혁명 후 군법이 제3차 개정되자 부인은 1961. 9월에 재심청구서를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제출하였다.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는 판결심의회 의견과 증인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1964. 10. 23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상관의 작전명령에 의해 한강교를 폭파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복종할 뿐 달리 폭파

시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므로 조급한 폭파에서 초래된 한강 북방의 우리 인원과 장비의 손실은 피고인의 책임이라 할 수 없고,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 인정된다.”고 하여 군법회의법 제370조(당시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4. 조봉암 사건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의 사실관계 조작을 바탕으로 범인이 불충분한 증거를 중시하고 관계자의 진술 번복을 무시하면서 철저한 사실조사 없이 사형판결을 내린 전형적인 오판사례라 할 수 있다. [10] 또한 제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으로 형량이 바뀐 것은 이승만 정권이 정적을 사법적으로 살인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 사건은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오판이 아니라 확정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었다고 한다. [11]

당시 서울경찰국은 남파공작원들을 대상으로 진보당의 경강정책, 특히 평화통일론노선의 이적성에 대해 내사를 벌였고, 1958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동년 1. 13일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혐의로 체포하였고, 한편 육군특무대는 같은 해 2. 8일 HID 공작요원으로 남북교역을 하던 양이섭을 연행하여 여관 등에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북한의 지령 및 자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하면 조봉암은 1952. 8. 5일 제2대 대통령선거에서 80여만 표, 1956. 5.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16여만 표라는 지지를 얻었고, 1956. 11. 10일 진보당이 창당되면서 조봉암이 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조봉암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였음에도 특무대는 양이섭으로부터 자백을 받아 양이섭과 조봉암을 간첩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검찰은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하여 국가변란(국가보안법 제1조) 혐의로 1958. 2. 8일과 2. 1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하였고, 양이섭과 조봉암에 대해서 간첩죄(형법 제98조)로 같은 해 4. 3일과 4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기소하였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한 다음 1958. 7. 2일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의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조봉암과 양이섭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간첩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제3조를 적용하여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58. 10. 25일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여 조봉암과 양이섭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1959년 2월 27일 조봉암의 간첩 및 국가변란 혐의, 양이섭의 간첩혐의

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사형을 확정하였다. 조봉암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대법원은 1959. 7. 30일 이를 기각하였으며, 이승만 정부는 재심결정을 하기 전날 양이섭과 재심청구를 기각한 다음날 조봉암에 대하여 사형을 각 집행하였다.

이 사건에 대하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7. 9. 27일 이 사건에 대해 “육군 특무대는 양이섭을 1958. 2. 8일부터 구속 영장이 집행된 동년 3. 8일까지 1개월여 외부와의 연락이 일체 두절된 채 여관에서 불법 감금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였고, 조봉암과 양이섭은 그 혐의 내용이 국방경비법이 아니라 형법 제98조 및 국가보안법 위반이었으므로 특무대는 이들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무대 수사관이 조봉암과 양이섭에 대해 수사를 행하였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당시 형법 제124조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현행 직권남용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재심판결에서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서는 “국헌을 위배하여라 함은 대한민국헌법에 위반하는 것을, ‘정부를 참칭한다’고 함은 합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를 조직하여 진정한 정부인 것처럼 사칭하는 것을, ‘국가를 변란한다’고 함은 정부를 전복하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각 의미하고, ‘결사 또는 집단’이라 함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 특정 다수인의 임의적인 계속적 또는 일시적 결합체를 말한다. … 그 구성된 결사나 집단의 공동목적으로서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 즉 주관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그 결사나 집단의 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통이나, 외부적으로 표방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구애되지 않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이 실제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어느 구성원 한 사람의 내심의 의도를 가지고 그 결사 또는 집단의 공동목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평화통일의 실현 등을 강령·정책으로 하여 결성한 ‘진보당’은 그 경제정책이 사회적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부작용이나 모순점을 완화·정화하려고 하였을 뿐 사유재산제와 시장경제체제의 골간을 전면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고, 정치형태 역시 추천제민과 대의제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등을 목표로 하였을 뿐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그 결성 목적이 대한민국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진보당의 통일정책인 평화통일론이 북한의 위장평화통일론에 부수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아무런 증거도 없어 그 결성이 북한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 국가보안법(1958. 12. 26.

법률 제500호로 폐지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3조에 정한 '불법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간첩죄에 대해서도 "형법 제98조 제1항에서 간첩이라 함은 적국에 제보하기 위하여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군사상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상 등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하는 것을 말하고, 간첩행위는 기밀에 속한 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수집한 때에 기수가 되므로 간첩이 이미 탐지·수집하여 지득하고 있는 사항을 타인에게 보고·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의 사후행위로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단의 대상이 되는 간첩행위 자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간첩의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보당의 중앙위원장인 피고인이 이미 지득하고 있던 관련 문건 등을 보고·누설한 행위에 불과하여 그 사실 자체로서 형법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첩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판결[12]을 하였다.

5. 인혁당 사건

이 사건은 당시 사회가 전기가 아닌 평시상황에서 과도한 사형대상 범죄의 규정, 오판과 사형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된 대표적 오판사례라고 할 수 있다.

1972. 10. 17일 유신이 선포된 이후 유신반대투쟁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투쟁을 주도하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였고, 1974. 4.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23명이 구속되었다. 1964. 8. 14일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라는 북한의 노선에 따라 움직이는 반국가단체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포섭, 당 조직을 확장하려다가 발각되어 체포된 것'으로 발표하였다. 사건 직후 한국인권옹호협회가 무료변호를 맡았고 피고인에게 가해진 고문 내용을 폭로하였으며, 1965. 1. 20일 선고공판에서 반공법 위반으로 도예종과 양춘우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같은 해 5월 29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여 도예종과 양춘우 외에도 박현채를 비롯한 6명에게 징역 1년,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비상보통군법회의의 제1심판부는 이 중 여정남에 대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내란 선동, 반공법 위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74비보군형항 제14호, 제17호, 제18호)하였고, 비상보통군법회의의 제2심판부는 도예종·김용원·이수병·하재원·서도원·송상진·우홍선 등에

대하여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74비보군형항 제15호, 제16호)하였다. 피고인들은 이후 1974. 7. 11일과 7. 13일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모두 사형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각 재심대상사건이 병합되어 1974. 9. 7일 비상고등군법회의의 74비고군형항 제14호, 제15호, 제16호 판결로 피고인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인 ① 헌법위반 ② 법률위반 내지 법리오해(군법회의법 위배, 저항권에 의한 행위, 국가보안법 제1조의 반국가단체에 대한 법리오해, 국가보안법 제1조의 목적과 내란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반공법의 법리오해, 압수 및 몰수가 불법하다는 점) ③ 비공개재판의 위법성 ④ 공판심리절차상 위법 ⑤ 증거조사 절차의 위법(군법회의의법상 증인신문의 위반, 제1심의 증거채부 위법, 제1심 증거조사 방식의 법을 위배, 제1심의 심리절차 법을 위배) ⑥ 채증법칙 위배 ⑦ 이유불비의 위법 ⑧ 심리미진, 석방권불행사, 공판중심주의 및 자유심증주의 위배의 위법 ⑨ 양형부당 ⑩ 변호인 접견권 및 교통권의 금지 등에 대하여 전부 이유없음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13]하여 각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민청학련운동계승사업회 자료에 의하면 제2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의 판결문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다만, 당시 위협을 무릅쓰고 군법회의에 나와 변론에 참여했던 변호인들의 기억에 의하면, 공소장과 판결문은 날짜만 다르고 나머지 내용은 모두 같으며 판결문도 1심에서 3심까지 변동이 없다고 한다(비상보통군법회의의 판결문). 사형선고를 받은 8명에 대해서는 1975. 4. 8일 국방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과 비상고등군법회의의 검찰부 검찰관의 형 집행지휘에 의하여 확정판결이 내려진지 불과 18시간만인 4. 9일 전격적으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동안 이 사건은 박정희 정권이 독재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앙정보부와 반공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로 거론되어 왔으나, 2002.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발표하였고, 같은 해 12월 인혁당재건위사건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또한 「국가정보원과거사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2005. 12월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진실위원회는 박정희 정권이 민정이양 직후와 유신체제 출범 직후 대학생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면서 다양한 반독재민주화운동 가운데 가장 치열하거나 진보적인 입장을 표명한 경우에 북한과 직접 연결되거나 조총련 등 국외공산계열의 배후 조종을 받는 반국가단체

로 몰고 간 대형공안사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학생시위로 인한 정권의 위기상황 속에서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사건의 실체가 매우 과장되었고 짜맞추기 수사로 이 단체를 무리하게 반국가단체로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과정이나 핵심인물들의 소재를 찾기 위해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자행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 2005. 12월 재심이 시작되었고, 2007. 1.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이 집행된 여정남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우홍선, 송상진,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도예종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반공법위반, 피고인 여정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예비음모 및 반공법위반의 점 중 반독재구국선언문 제장 반포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반공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그리고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각 면소로 판결하였다. 법원은 ①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검사가 신청한 증거 중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증거들에 대하여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등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였고, ② 공판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로 적법하지 않은 수사와 재판에 희생되었던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하였으며 사법부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게 되었다.

III. 외국에서의 오판 사례

1. 미국

1984. 1. 24일 집안 사정을 잘 아는 침입자에 의해 잠을 자던 한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천장에 목이 매달린 채로 발견되었다. 지능이 조금 낮았던 데이비드 바스케즈(David Vasquez)는 경찰의 신문에 범행을 자백하였고 2급 살인과 절도에 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였rg, 재판에서 검찰 측은 Vasquez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서성이던 것을 목격했다는 두 목격자의 증언과 피고인은 알리바이가 없으며 사건 현장에서 찾은 음모(陰毛)가 Vasquez 것과 일치한다는

모발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였다. 변호인 측은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이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며 자백에 대한 증거제출금지를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결국 Vasquez는 유죄가 인정되어 35년형을 선고받았다. Vasquez는 복역 중에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세 곳의 DNA분석실에 음모 증거에 대한 재분석을 의뢰한 결과 그 음모는 Vasquez의 것이 라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리고 다른 강간 및 살인 사건의 증거물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Vasquez사건에서 수집된 음모가 Timothy Spencer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Vasquez의 자백은 그가 범죄에 대해 꿈을 꾸었던 내용을 진술한 것이 범죄를 자백한 것으로 탈바꿈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Vasquez는 5년 복역 후 1989. 1월에 자유의 몸이 되면서 미국에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분석(14)을 통해 무죄가 입증되어 풀려나게 된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DNA분석을 통해 무죄를 입증 받은 사례는 268건에 이르며 2010년 동안에만 29건에 이른다. 매년 진행되는 미국 형사재판의 수와 비교해 보면 이 수치는 매우 적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오판 사례들은 미국 형사 사법체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2003년 Illinois주 라이언(George H. Ryan) 주지사는 Illinois주의 모든 사형수들에 대해 감형 조치를 하였고, 사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와 사형 집행을 중지시켰다.[15]

미국에서 잘못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 중 25%는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 자백 또는 유죄협상(Plea-bargaining)이 이루어진 경우였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허위자백을 하게 되는 요인으로는 협박, 강압, 취중 상태, 정신장애, 법에 대한 무지, 높은 형량에 대한 위협,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이었다 (Innocence Project, Understand the Causes, d, n.d.).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성인에 비해 순응적이어서 죄를 인정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는 경찰관의 말을 믿고 자신이 범인임을 인정한 사례들이 많았다. 자백증거는 피고에게는 아주 불리한 증거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증거가 없이 자백증거만으로도 유죄 판결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16] Kassir과 Sukei의 연구에서 피고인의 자백은 강압에 의한 것이었고 판사가 자백증거를 증거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모의배심원들(대학생)도 자백증거가 피고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조건보다 유죄판결 비율이 25% 정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백증거가 법정에서 제시되면 허위자백 여부에 관계없이, 또한 피

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판단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자백은 하였지만 유죄를 인정(plea-bargain)하지 않은 피고에 대한 배심원의 유죄 판결율은 실험에 따라 73%에서 81%로 자백 증거 자체가 피고인에게 얼마나 불리한 증거인지 보여준다.

2. 일 본

일본에서는 1949년 여객열차 전복사고에서 예단에 의한 수사와 증거조사 없이 증거로 채택하여 유죄를 선고한 송천(松川)사건 판결[17]과 팔장도(八丈島) 사건이 있다. 1946년 八丈島 三根村에서 66세 노인이 자택에 죽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피해자 집에 출입하고 있던 K와 그 친구 중에서 정신박약인 Y 두 사람이 체포되었다. 두 사람은 고문과 유도에 의해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고문 사실은 경찰관도 인정할 수 없는 정도로 증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과 항소심이 이 사실을 무시하고 두 사람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 사건으로 최고재판소에서 무죄[18]가 된 경우이다.

이외에도 팔해(八海)사건[19], 인보(仁保)사건[20], 삼응(三應)사건[21] 등은 하급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무죄가 된 경우이다. 특히 삼응사건은 1949. 7. 15일 21:23분경, 국철삼. 전차구차고의 무인 전차가 폭주 탈선하여 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0일 전에는 하산국철총계가 수수께끼의 죽음을 맞고, 1개월 뒤에 松川事件이 발생하였다. 수사는 처음부터 예측을 기초로 국철노조와 일본 공산당관계자에게 방향이 맞추어졌고, 7. 17일부터 검거가 시작되고, 9명의 공산당원과 竹内景助가 기소되었다. 자백이 강요되어 최종적으로 竹内景助만 단독범행이라는 자백을 받아들여 유죄가 되었다. 동경고등재판소는 사실심리 없이 竹内景助의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변경하였고, 최고재판소도 변론을 열지 않고 8:7로 상고를 기각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1956(소화 31년). 2. 3일 竹内景助가 재심을 청구하고 전국적으로 재심에 대한 조영요청 운동이 확대되어 갔지만 竹内景助는 뇌진탕 때문에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오관사건이 속출하면서 일본에서도 사형폐지 논의가 활발하여졌다.

3. 기 타

대부분의 오관 사례들은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세계적으로 오관이 밝혀진 곳은 영국, 캐나다, 노르웨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드, 중국, 일본 등이다.[22]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2,500개의 재판 중 한 건 또는 430개의 재판 마다 한 건이 오관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23] 예컨대 1949. 11. 7일 Timothy John Evans의 부인과 자녀들의 살해사건에 남편 Evans가 체포되어 살인 누명을 쓰고 사형의 집행된 이후에 진범이 검거되어 생명을 회복할 수 없었던 Timothy John Evans 사건, Rosenberg 부부사건, 1952년 크레이벤티리(R. V. Craig Bentley) 사건 등이 있다.

영국의 사형폐지운동에 공헌한 캘버트(Roy Calvert)는 “우리 영국인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세계 어떤 나라와 비교해도 뛰어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재판소에서 오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하였다. 인간인 법관이 행하는 판결에서 오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또한 억울하게 집행되어버린 사안에서 실제적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24]

IV. 결 어 : 제 언

세계적으로 오관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관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2년 설립된 「Innocence Project」는 Yeshiva대학 Cardozo 로스쿨의 Barry Scheck과 Peter Neufeld에 의해 설립되었다. 지금까지 오관 관련 연구나 사례 분석이 잘 되어 있는 미국의 사례 분석을 통해 미국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오관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해주고 있다.

사형제도는 사회구성원에 대한 가장 강력한 형벌로서 인간과 그 역사를 함께 하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 역사를 마감할 때가 되었다. 사형제도의 범죄억지 효과를 비롯한 공리적 목적이 명확하게 검증 가능한 부분이 아님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는 다른 형벌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형집행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범죄억지력을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 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형집행에 따른 무해화 측면에서의 효과로 사형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기형으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형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사형제도의 범죄억지 효과 유무는 본래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험적·실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즉 사형제도의 시행으로 인한 위하력 다시 말하면 일반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실증적인 자료도 없으며, 효과 면에서도 무기징역형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오히려 사형이 인간의 본성을

야수화시켜 잔인한 범죄를 유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위하력이 없는 사형을 존치하기 보다는 범죄정책과 치료적·경제적·사회적·교육적 정책 등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절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Han, iN-Sub, "the problem and improvement scheme of capital punishment". 「criminal case policy」, 5, Korea criminal case policy institute, p. 41,1990.
- [2] Oh, Young-kueon, "A historical study on the dispute for maintenance or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International remission committee Korea communication committee, 「The theory and reality of capital punishment system」, Ccachi publisher, pp. 47-49,1989.
- [3] Llompart Jose, Kanazawa Fumio, 「Law and Morality : the theory and practice」, Tokyo, Seibundoh, p 121, 1973; Mae Saka Toshiyuki, "Wrongful Convictions of the Death Penalty", 「Freedom and Justice」, 36(10), p 26-33, 1985
- [4] Dongaillbo, p.2, 1985. 12. 20.
- [5]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252th, the assembly records of international legislation judicature committee, issue 1, pp. 14-15, 2005. 02. 18.
- [6] National human right committee, 「researching people's consciousness on capital punishment」, p. 200, 2003.
- [7] past affairs arrangement committee for truth and compromise, 「Total report of truth and compromise committee I」, pp. 192-193, 2010.
- [8] Supreme Court 1982. 9. 14, 82do1479.
- [9] Seoul Jungang District Court 2012. 10. 22, 2011do14.
- [10] Bu, Taek Hoon, "A study on the relief of misjudgement and retrial system : focused on the capital punishment case ", doctorate paper , Graduate school DaeJoen University, p. 65, 2001.
- [11] You, Ji Young, "A study on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doctorate paper, Graduate school Joong Ang University, pp. 137-138, 1995.
- [12] Supreme Court 2011. 1. 20, 2008do11.
- [13] Supreme Court 1975. 4. 8, 74do3233.
- [14] Sherrer, Hans, Illinois Governor George Ryan Pardoned Four Innocent Men Condemned to Death On January 10, 2003, and the Next Day He Cleared Illinois' Death Row, Justice Denied Magazine January 31, 2003.
- [15] http://www.innocenceproject.org/Content/David_Vasquez.php.
- [16] DeClue, G. Psychological consultation in cases involving interrogations and confessions, 33 Journal of Psychiatry & Law, 2005, pp. 313-366.
- [17] Supreme Court of Japan 1963. 9. 12. Showa36 2378.
- [18] Supreme Court of Japan 1957. 7. 19. Showa26 1770.
- [19] Supreme Court of Japan 1968. 10. 25. Showa41 108.
- [20] High Court in Hiroshima 1972. 12. 14. Showa45 193.
- [21] Supreme Court of Japan 1955. 6. 22. Showa26 1688.
- [22] Kassin, S. M., Drizin, S. A., Grisso, T., Gudjonsson, G. H., Leo, R. A., & Redlich, A. D. Police-induced confessions: Risk factors and recommendations. Law & Human Behavior. 34(1), pp. 3-38, 2010.
- [23] Wagenarr, van Koppen, & Crombag, 1993(Lee, Kang-Cheon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Abolition of Capital Punishment and its Alternatives",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Honam University, 2013).
- [24] Lee, Kang-Cheon, ibid.

저자 소개



이 동 명

1978 : Wonkwang University
(College of Law)

1982 :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Law)

1988 : Wonkwang University
(Doctor of Laws (Criminal
law))

1986 : Professor in the Dept. of
law, Honam University

1997 : School of Law, Arizona
USA (Visiting Professor)

2007 : Korean Law Association
(Chairman)

2009 : Gwangju·Chonnam
Criminal law Association
(Chairman)

present : Professor. Dept. of law,
Honam University

Interest : Criminal Laww,
Criminal Procedure

Email : dmlee@honam.ac.kr